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준형의원 등 30인(의안번호 제220283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주문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준형의원 등 30인
2. 제 안 일 : 2024. 8. 14.
3. 회 부 일 : 2024. 8. 16.

II. 주문 및 주요내용

주 문

일제 35년의 식민지배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로 끝났으나, 그 시작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이다. 경술국치일은 광복 이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나, 한·일 협정을 준비하던 1960년대에 명시적인 이유 없이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경술국치일을 국가추념일에서 제외한 조치가 부당함을 지적하며 재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각급 학교, 시민단체 등의 학술행사, 전시행사, 문화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면서 일본 정부를

향하여 올바른 역사 성찰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입장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은 지난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제로 침탈당한 치욕의 날임. 이로 인해 시작된 피지배의 역사가 민족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져 우리 현대사에 커다란 아픔을 남긴 역사적 통한의 날이기도 함.

우리 민족을 핍박했던 제국주의의 망령은 오늘날에도 죽지 않고 살아 있음.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재하는 등 20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또한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의 반인륜적 전쟁 범죄에 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른 책임도 거부하고 있음.

나아가 최근 일본은 일왕과 신사(神社)의 권위를 등에 업고 과거 제국주의의 향수를 자극하여 자위대의 규모 및 역할을 확대하고, 2022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임.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높은 경각심을 요구하며, 한·일 양국 사이에 경술국치의 역사적 의미가 유효함을 여실히 증명함.

한·일 강제병합의 경술국치로써 시작된 일제의 식민 지배와 이에 편승하며 형성된 소위 친일 지배 세력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심각히 왜곡하였으나, 광복 이후 일제 잔재 청산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음.

따라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독립을 더욱 굳건히 다짐하는 경술국치일은 ‘역사 성찰의 날’이 되어야 함. 나아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한·일 양국의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관계 개선의 지렛대가 될 것이기에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Ⅲ. 검토의견

동 결의안은 ① 경술국치일(8월29일)¹⁾을 기념일의 일환인 국가추념²⁾일로 지정하고,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각종 학교, 시민단체 등의 학술행사, 전시행사, 문화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③ 정부가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면서 일본 정부를 향하여 올바른 역사 성찰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입장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경술국치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추념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국권이 침탈당한 역사를 성찰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³⁾.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을 전하도록 함으로써, 한·일 간 과거사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경술국치일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른 국가기념일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날을 의미함.

2) “추념”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의미임(표준국어대사전)

3) 참고로, 현재 추념일 성격의 기념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3희생자 추념일’이 지정되어 있음.

<국가기념일 지정 기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결의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기념일 지정은 기념일 명칭, 일자, 행사 내용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정 후 기념식, 부수행사 등을 개최해야하므로 지정에 앞서 유관기관 보유,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

국가기념일 지정 현황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부처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3	3·8민주의거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4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7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9	식목일	4. 5.	농림축산식품부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12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관광부
18	순직의무군경의 날	4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1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20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21	아버지 날	5. 8.	보건복지부
2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화체육관광부
23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24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25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26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27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28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29	환경의 날	6. 5.	환경부
30	현충일	6. 6.	국가보훈부
31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32	6·10만세운동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33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34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35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
36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37	푸른 하늘의 날	9. 7.	외교부 · 환경부
38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39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40	세계 한인의 날	10. 5.	재외동포청
41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42	스포츠의 날	10. 15.	문화체육관광부
43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 16.	행정안전부
44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45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46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47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48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10. 29.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49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50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 국가보훈부
51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식품부
52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부
53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
54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자원부
55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문 의 처

02)6788-5337